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의 안 번 호 10330

동의연월일: 2025. 5. 1.

동 의 자 : 박성준의원 등 170인

주 문

2025년 5월 1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46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할 것을 동의함.

동의이유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행정부의 부총리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아닌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음. 또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대통령 개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하려 하였음.

피소추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중대한 국법상 행위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하지만 피소추자의 그간의 반헌법적이고 위 법한 직무집행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이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 법률 위반행위임.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은 피소추자의 헌법·법률위반 행위를 국민께 밝히고 그 직에서 파면하기 위해 지난 2025년 4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좀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음.

따라서 피소추자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수호와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국민적 요구와 국회의 책무를 다하고자 제424회국회(임시회) 회기종료가 얼마 남지 않는 상 황에서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하여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위해 의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46항으로 추가 상 정하여 심의·처리할 것을 동의함.